

## [ 어민홍보사항 ]

### = 개정 수산자원보호령 해설 =

#### —수산청 제공—

#### 1. 개정배경

수산자원보호령은 수산업법 제48조와 제74조에 의거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1963년에 제정된 법령으로 1976년 7월 9일에 전면 개정한 바 있으나, 본 개정 후 국내외 어업여건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그 보완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200해리 경계수역시대를 맞아 각 연안국은 200해리내의 수역을 자국의 영토개념화하고 있어 우리 연근해어장도 우리 국토의 일환으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경부에서는 우리 연근해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민소득증대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어초시설, 종묘배양장의 증설 및 유용 수산종묘 생산방류등 수산자원조성작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우리 연근해어선의 척수 및 규모의 증대와 어로기술장비등의 발달로 한정된 어업자원에 비하여 어로수단을 과도하게 투입되어 일부 저서자원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일부 부정어업의 잔존으로 보호되어야 할 새끼고기까지 남획하므로서 수산자원의 감소를 더욱 촉진하고 있어 연근해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보호관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근해어업을 자원관리 및 어업조정상 당면문제점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고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자원보호령을 전반적으로 개정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원보호령 개정을 위하여 1980년부터 어민, 업계, 시도 실무자 등의 의견을 사전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기관의 과학적인 연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개정시한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안에 대하여도 1년동안 전체 수산계의 광범위한 의견검토를 거쳐 1981년 11월 수산청에서 어민, 학계, 각시도, 국립수산진흥원, 수산업협동조합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 90여명이 참석한 종합공청회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금번 개정한 수산자원보호령개정내용이 일부 지역, 일부어민에게는 다소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앞으로의 우리나라 수산 전체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본 자원보호령 운영에 적극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 2. 개정주요내용

##### 가. 일부어업의 조업구역 조정

###### ○ 기선선인망어업 조업구역

- 기선선인망어업의 조업어장이 연안어장이므로 수면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타연안어업과 어업조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제1구와 제2구의 조업구역을 도계로 조정하고 전라북도를 제3구로 분구하였으며,

- 또한 제2구 기선선인망어업(권현망어업)의 금지구역을 최근 멸치자원상태와 동 구역내의 멸치서식수역을 감안,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 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 확대

제주도 주변의 저서어족 자원관리와 연안어업보호를 위하여 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을 제주도연안으로부터 남동 및 남서 15해리에서 최대 40해리까지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 ○ 잡수기어업 조업구역 조정

- 연안수산자원의 적극적인 보호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관할수

역에 대한 적극적인 자원조성과 자원보호관리를 기할 수 있도록 정착성 연안수산자원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잠수기 어업의 조업구역을 각 도별로 조정하였으며,

#### 개정전 4구→8구로 조정

- 조업구역별 허가정한수는 개정전 시도별 허가정한수 그대로 두되 경과조치로 “기존허가자로써 1981년중(1년간)에 어업허가를 받은 시도 이외의 시도에서 18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시도의 어업허가를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영시행후 1년 이내에 당해시도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개정전 제2,3구의 경계와 경남, 전남도계간의 남해군 수역에 대하여는 어업조정상 경남어선 14척, 전남어선 30척에 한하여 조업토록 하였습니다.

#### 나. 근해어업의 허가정한수 신설 및 조정

- 근해어업은 최근 조업척수, 어선규모증대와 어로장비의 과학화로 어획강도가 증가된 반면, 일부 연근해어업자원은 감소추세에 있어 단위노력당 생산량을 저하되고, 이에 따라 어업경영도 어려워지고 있어 어업별로 어장실태를 분석하고 어업별 대상자원의 최대지속적 생산량을 감안하여 근해어업의 허가정한수를 신설 및 전면재조정 하였습니다.
- 허가정한수가 신설된 어업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근해통발(장어통발)어업이며, 허가정한수를 조정한 어업은 근해안강망어업, 기선선인망(권현망)어업, 기선형망어업입니다.
-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개정된 허가정한수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 특정어구의 제작, 판매 및 소지의 금지

- 정부에서는 연근해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매년 냥은 예산을 들여 인공어초

#### 어업별 허가정한수 조정내역

어업별	조업구역	허가정한수	
		현행	개정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 80전 쌍끌이 180전
대형트롤			60전
근해안강망		1,100전	850전
대형선망			35전
기선형망		540전	540전
	인천직할 시및경기 도	180전	100전
	충청남도	180전	180전
	전라북도	180전	260전
기선선인망(권현망)		200전	150전
	제1구	160전	124전
	제2구	40전	16전
	제3구		10전
근해통발(장어통발)			300전

시설, 종묘배양장증설 및 인공종묘생산방류사업등을 확대 실시하고 있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전국의 지도선파단속요원을 동원하여 어업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수산업의 압력존재인 부정어업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치어까지 마구 남획하므로써 연안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 이번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이들 부정어업을 완전 제거하기 위하여 소형기선저인망을 비롯한 법령규정에 없는 부정어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구를 제작, 판매 및 소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 라. 세망을 사용하는 낭장망, 해선망, 연안안강망 등의 금어기간 설정

- 주로 서해안 일대에서 멸치, 젖새우를 잡기 위하여 모기장 그물같은 세망(細網)을 사용하는 일부어업은 조업시 모든 치어가 남획되므로 효율적인 수산자원 이용관리를 위하여 이들 어업은 금지시키거나 제한 억제가 불가피한 어업

입니다.

-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이들 어업에 대한 신규허가는 일체 중지하였으며, 이들 제 3종 공동어업의 면허도 억제하고 있읍니다만 연안치어자원보호를 위해서는 이들 기존허가어업도 치어가 주로 잡히는 시기중에는 전면 조업을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연안어민의 생계면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조치로 1개 월만 조업을 전면 금지토록 하였읍니다.
- 그 내용은 낭장망, 주목망, 해선망, 연안안강망 및 이와 유사한 망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면 조업을 금지하였으며, 다만 인천직할시, 경기도 및 충청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조업을 금지하였습니다.

#### 마. 금지체장, 금어기, 어망목 조정 기타

- 자원고갈의 우려가 있는 일부 어종 및 어업이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상 불합리한 조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어업조정면은 고려하여 전면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 ○ 채포금지기간 신설 및 조정

- 자원의 효율적인 보호 및 이용관리를 위하여 실뱀장어, 해삼, 은어, 빙어, 꽃게 및 기선형망어업의 금지기간을 신설 및 조정하였으며,
- 꽃게금지기간은 산란기에 연안으로 내유하는 꽃게어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이므로 동치나해의 국제어장에서 조업 시 혼획되는 꽃게는 제외 조치하였으며
- 서해안 쾨류 산란성기의 어미보호와 저층에 부화 축생하는 치어보호로 이들 어장에서 쾨류의 지속적 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기선형망 금지기간 6.1~8.31을 수산자원보호령에 명문 규정화 하였읍니다.

#### ○ 채포금지체장

- 봉장어 자원보호를 위하여 채포금지체장 신설 : 35센티미터

#### ○ 작살어 구 사용제한

어종 및 어업	채포금지기간 신설 및 조정
실 뱠 장 어	채포금지기간 삭제(총전 2.1~6.30)
해 삶 어	7. 16~10. 15(신설)
은 어	9. 16~10. 16 단, 강원도는 8. 1~9. 30(단서 신설)
빙 어	3. 1~3. 31(총전 3. 1~4. 30)
꽃 게	7. 1~8. 31 단, 대형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 근해안강당어업은 제외(단서 신설)
기선형망어업	6. 1~8. 31(신설)

• 어업자가 아닌 자가 면허, 허가, 신고 없이 자유로이 수산동식물을 잡을 수 있는 어법중 작살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근 일부지방에서 공동어업권자와 어법분쟁이 빈번히 야기되고, 또한 등어법이 일반어업화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의 작살어업도 신고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 3. 결 론

- 이상 이번 수산자원보호령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요약 설명드렸읍니다만 본 법령의 목적이 우리 연근해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수산물의 지속적 생산과 어민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우리 어민 모두가 합심하여 본 법령사항을 출선 준수함으로써 우리들의 어장을 황금어장으로 가꾸고 보존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 우리 연근해어장에 대한 수산자원조성이나 보호관리는 모든 어민의 적극적인 협력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 여러분 각자가 오늘 하루의 이익만을 위하여 영원한 우리 생업터진인 연근해어장을 황폐화시키지 말고 긴 안목에서 부정어업근절을 출선수범하고 우리 어장을 우리 스스로가 보호관리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의 소득을 증대될 것이며 우리들의 번영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끝)